

영등포구의회
제155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0. 9. 7.

行政委員會
專門委員 李憲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호로 2010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민선5기 새로운 시작으로 ‘교육·복지·사람중심의 새 영등포’의 구정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조직 개편·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국 명칭 변경(안 제3조).
 - “재정경제국, 주민생활지원국, 도시환경국, 건설교통국”을 “재정국, 복지국, 도시국, 건설국”으로 함.
- 행정국의 “행정지원과”를 “총무과”, “주민자치과”를 “자치행정과”로 하고, “국제지원과”를 삭제(안 제5조제1항).
- 재정경제국의 과별 순서 변경 및 분장 사항 변경(안 제6조).
 - “재무과, 세무과, 부과과, 지역경제과 및 지적과”를 “재무과, 지역경제과, 세무과, 부과과 및 지적과”로 함(안 제6조제1항).
 - 분장 사항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순서를 변경하되 “제6호. 국제금융 특구지정 추진 및 금융도시 육성전략 계획수립”을 신설하고, “제9호.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하며, 제14호의 “새주소 추진에 관한 사항”을 “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”으로 함(안 제6조제2항).

- 주민생활지원국의 “주민생활지원과”를 “복지정책과”로 하며, “노인 복지과”를 가정복지과 다음에 신설(안 제7조제1항)하고, 분장 사항에 “제14호.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 · 유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”을 신설(안 제7조제2항).
- 도시환경국의 “공원녹지과”를 “푸른도시과”로 하고 “맑은환경과”를 “환경과”로 하며(안 제8조제1항), 분장 사항의 제1호부터 제16 호까지의 순서를 변경하되, “제1호. 도시계획의 수립 ·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”을 “제3호. 도시계획의 수립 · 조정 및 결정, 도시환경정비사업,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“제2호. 주택개량, 도시재개발 및 뉴타운사업 등에 관한 사항”을 “제1호. 공동주택관리, 주택개량, 도시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“제4호.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”과 “제18호.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”을 신설(안 제8조제2항).
- 건설교통국의 “가로경관과”를 “건설관리과”로 함(안 제9조제1항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민선5기 ‘교육 · 복지 · 사람중심의 새 영등포’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조직을 재정비하면서, 신설 및 폐지되는 부서와 조정되는 부서별 업무에 따른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조직을 구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- 재정경제국, 주민생활지원국, 도시환경국, 건설교통국을 각각 재정국, 복지국, 도시국, 건설국으로 국명을 변경하고, 행정지원과, 주민자치과, 주민생활지원과, 공원녹지과, 맑은환경과, 가로경관과를 각각 총무과, 자치행정과, 복지정책과, 푸른도시과, 환경과, 건설 관리과로 과명을 변경하였음.
 -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노인 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분리하고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노인 복지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고, 국제지원과는 총무과 등 여러 부서의 유사업무와 통합하여 폐지하였으며, 여의도 국제금융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미래를 준비할 업무를 재정경제국에 신설하고, 주민생활지원국에 구민 건강 복지를 위한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·유지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음.
 - 도시환경국에 분장사항을 정비하였으며,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와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 - 이러한 개정안은 국명칭을 간소화하고 유사업무 통폐합과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, 지역경제 활성화, 주거환경 개선 등 구민 생활에 가장 가깝고 영향이 많은 업무를 강화하는 바람직한 조직 개편이지만 국명칭 변경이 과다축소한 면이 있고, 과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대민업무 처리에 혼선이 우려되므로 향후, 변경 시에는 구민에게 충분한 사전 홍보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관 계 법령

■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〈개정 2008.2.29〉

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

-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